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81조 제1항에 따라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절차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후보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총장임용 후보자를 말한다.
2. '입후보자'는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을 위한 추천절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권한)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검증에 관한 사항
2. 총장후보자의 이사회 추천에 관한 사항
3. 총장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4.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 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시기 및 존속 기간)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150일 전에 구성한다. 단,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날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① 추천위원회는 법인에 설치하고,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 12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교내외 인사 3인
3. 직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5인
4.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졸업생 포함) 2인
5.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인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③ 위원은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 제기·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은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 자료, 그 밖의 입후보자의 신상·경력·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할 때 입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사생활 비밀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⑤ 위원은 위원 취임 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소정 서식)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입후보자
- 2. 본교 교무위원
- 3. 휴직 중이거나 연구년, 공로 연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장·단기 파견 근무 중인 본교 교직원
- 4. 징계 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본교 교직원
- 5. 휴학·정학·국내외 교류수학 중인 본교 학생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후보자가 된 때
- 2. 위원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입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⑤ 기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재직 중인 총장 포함)으로서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지가 투철하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
- 2. 건전한 교육관과 도덕성을 갖추고 교내외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 3.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10년 이상 4년제 정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외 저명인사로서 본교 4개 단과대학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30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은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 ③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0조 (입후보자의 등록) ①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인은 4개 단과대학 이상에 분포되어야 하고, 1개 단과대학 추천인 수는 추천인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추천인 명부는 추천인 연명으로 작성하되 추천인이 자필로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추천인은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 동일인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을 모두 무효로 한다.
- ④ 추천인은 추천인 명부가 추천위원회에 접수된 후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⑤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인 명부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 ⑥ 교무위원(총장 제외), 대학평의원, 교수회 임원이 입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제5항의 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1조 (입후보자 검증 및 등록 무효)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추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1. 최근 5년간 연구실적에 대한 검증
- 2. 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증
- 3. 교내 징계 사안에 대한 검증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검증

② 제1항의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검증 결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입후보자 제출서류) ① 추천위원회는 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의 제출을 입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입후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2. 최근 5년간 연구실적
- 3. 범죄경력(상세)에 관한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후보자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총장후보자 선정의 방법) ① 검증을 통과한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총장후보자의 선출은 교수회에 위임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검증을 통과한 입후보자들의 등록서류 일체를 교수회로 송부한다.

제14조 (총장후보자 추천) 추천위원회는 교수회 의장으로부터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사회에 순위를 명기한 2인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

제15조 (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개정) 이 규정은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서 개정한다.

제17조 (행정 및 업무처리 등) ① 대구대학교 총장은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은 대구대학교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교무처장이 총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